

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공고 제2024-53호

공 시 송 달 공 고

벌과금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한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재산(부동산)압류 통지 등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, 주소불명,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형사소송법 제477조, 행정절차법 제14조,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. 12. 27.

공시송달 내역

1. 제목 :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고
2. 공고기간 : 2024. 12. 27. ~ 2025. 1. 10.(14일간)

연번	징제번호	성명	종별	미납액(원)
1	2024-1079	최수호	벌금	300,000
2	2024-1093	최원옥	벌금	4,000,000